

PL분쟁과 ADR

글 · 장응순 대표 신광경재무컨설팅

소송은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

소송(訴訟)은 국가권력에 기초를 둔 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은 법원과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해 진행되며, 그 절차의 안정과 공정이 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률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의 종류로는 민사소송이 있는데,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사인(私人)간의 분쟁을 법률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이다. 또 형사소송이 있는데, 범죄를 수사·공소·재판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이때 원고는 보통 검사가 된다. 끝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고 행정법규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은 소송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을 행할 포괄적인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법률로 규정하는 외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정된다.

소송비용(訴訟費用)은 넓은 뜻으로는 소송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를 말하나, 좁은 뜻으로는 그 중 법률로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비용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의 부담자는 법원이 정하는데,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비용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임비용을 포함한다.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피고인의 부담이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선임된 자가 변호인

이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가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辯護士)다.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기타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임을 요하고, 변호사회의 변호사명부에 등록해야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집무하고, 소속 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직업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행할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대부분은 변호사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는 세무사나 변리사의 직무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변호사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그 질서유지를 위하여 1949년 11월 7일에 제정된 법률(제63호)이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변호사의 사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선임된 자가 변호인(辯護人)이다. 통상적으로 보아 검사보다도 약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능력을 보충하고 도와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종의 소송행위를 한다.

피고인 등 사인(私人)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가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인이 되는 특별변호인이 있다. 변호인선임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되고, 일정한 중죄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

노사분쟁시 분쟁처리기관에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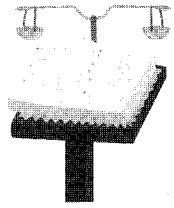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고,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사문제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처리기관은 노동협약에 의한 작업조건이나 환경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기관이다. 분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직장과의 합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기관을 거쳐 분쟁의 객관적 해결을 기도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현행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알선으로 쟁의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이송한다.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소비자의 보상을 현행 민법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획기적인 새 장(場)을 열었다.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조종 및 해결방법으로서 화해, 조정, 중재, 재판상 화해 그리고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화해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중도에서 종지하는 것이다. 이를바 합의가 그것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적 비



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유리하나, 당사자끼리 직접 맞부딪혀야 하므로 합의의 도출이나 쌍방이 양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의 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소액의 피해사례에서는 바람직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쌍방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화해계약과 같으나, 조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해계약과는 다르다.

이러한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는데, 강제조정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다. 임의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 당시 합의를 한 경우이고, 강제조정은 결정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조정안을 결정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간에 의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사안의 윤곽이 잡혀 분명해지면, 법원은 이를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자료 등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한 측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따라서 재판과정 중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적어도 당해 심급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고, 항소하여 계속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 한에는 제조업자로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계속해서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유의할 점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유사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특정사건에 대해 조정이나 화해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는 법원이 아닌 기구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강제력을 가지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는 같다. 그러나 그 주체가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구라는 점에서 판결과는 다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피해배상기구에서 그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소요기간이 길게 먹히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재판외 분쟁조정해결기구(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ADR의 기능에 대한 인기가 높아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DR은 그 설치근거법령에 따라 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중재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화해계약의 체결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의 실무자로서는 그 성격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히 이해한 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